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번호 ²⁾	거주지국	거주지국 주소	거주지전화	국내체재일 ⁵⁾
						최근 1년간
						일
성명 [영문 ¹⁾]		생년월일 ¹⁾	특례지역 ⁴⁾	국내 거소	국내전화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
						일
Surname	Given name	여권번호 ³⁾				일

- 1) 영문서명 •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된 대로 기재합니다.
- 2)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3) 여권에 기재된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 4) 거주지역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인 경우 “라부안” 기재,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선 원천징수하고,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합니다.
- 5) 국내 체재일 계산은 금융상품 가입시 또는 이자지급 등 원천징수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되는 빈칸에 O표 하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3.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6.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8.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첨부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거주자증명서(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된 자료), 여권사본

1. 거래기간 중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즉시 판정기준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겠습니다.
2. 금융기관별 금융상품가입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 3년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3.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 서명)

_____ 귀하